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 추가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3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5. 21.
3. 회 부 일 : 2026. 0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119구급대의 출동을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 추가

개정안은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추가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u>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 ② (생략) ③ 소방청장등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u>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0조의2제1항),

구급상황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이송병원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조의2제2항).

<구급상황센터 개요1)>

□ 조직 및 구성

- **(운영체계)** 국가 단위의 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급상황센터와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구급상황센터로 운영
- **(인력구성)** 총 357명[관련 자격을 갖춘 구급 상황요원(응급구조사, 간호사 등)과 전문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전문의)로 구성]

□ 주요 기능

- ① **(의료 상담)** 국민이 적절한 의료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 ② **(현장 지원)** 현장 구급대원이 적절한 최종 치료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상황 관제 및 실시간 응급처치 의료지도 제공
- ③ **(재난 대응)**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사상자 상황 관리를 조정·지원하며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등 중요 사항 유관기관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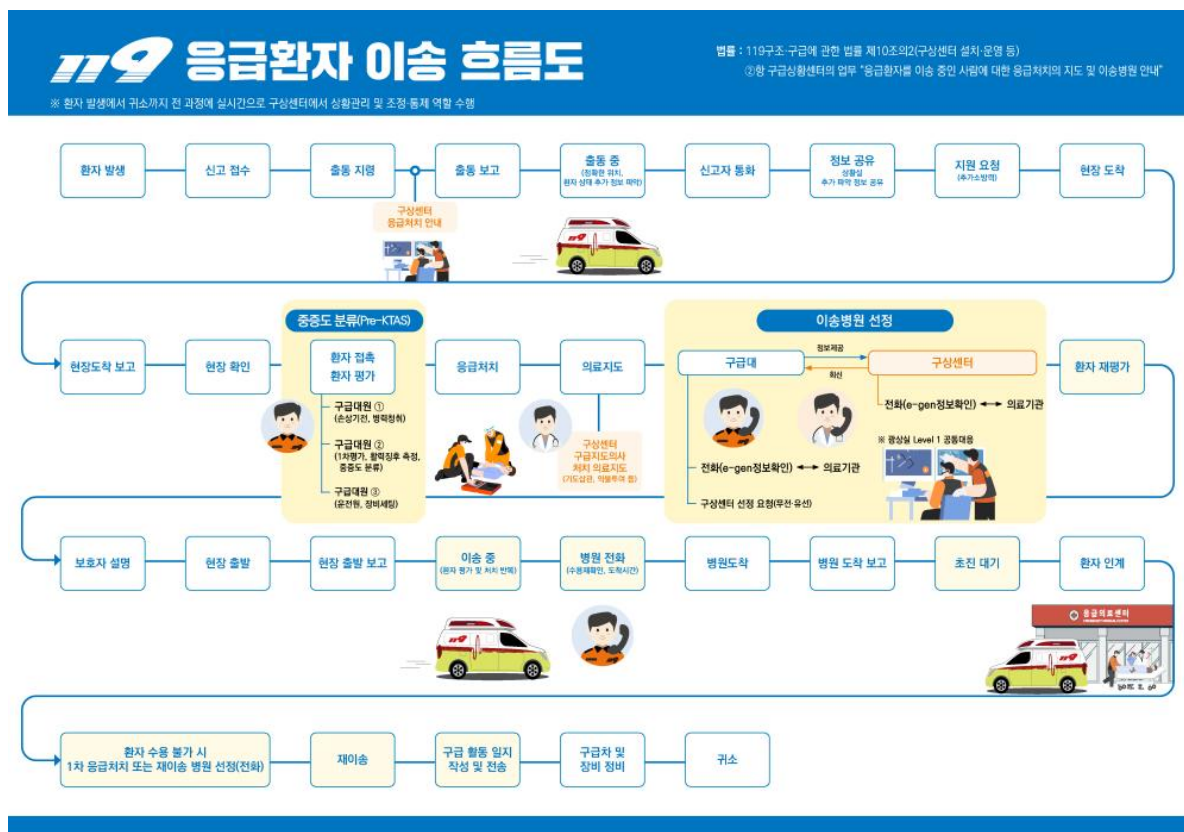
※ **(중앙 119구급상황센터)**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 전국 의료지도 백업, ▲ 광역 이송자원 연계, ▲ 응급의료헬기 운용 조정 등 국가 단위 구급상황관리 역할 수행

(자료: 소방청)

1) 구급상황센터 상세 개요는 [참고 1] 참조

현행 119응급환자 이송 절차를 살펴보면,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 소속 수보요원이 이를 접수함. 119 신고가 접수되면 수보요원은 환자 발생 위치, 신고자 연락처, 주요 증상 등을 우선 확인하여 구급 상황 여부와 기본 정보를 파악함. 이후, 수보요원은 긴급도가 높은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구급대에 우선 출동 지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상담요원에게 전화를 이관함²⁾.

<119 응급환자 이송 절차/흐름도>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내 ‘119상황실 운영지침(수보단계 중증 응급환자 인지 프로토콜), * 관련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한편, 현행 법령은 단순 치통환자,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는 구급출동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장소에 “출동”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구급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송’을 거절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송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개정안은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추가하고(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구급상황센터 업무: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 행	개정안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신 설>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소아 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2019년 이후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현장에 출동을 하였으나 신고 취소, 현장 처치 완료, 신고자의 이송 거부, 비응급환자 등을 이유로 한 미이송률은 27.9% ~39.6%로 나타나고 있고 미이송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119구급차 출동건수 및 이송건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률	미이송 건수	미이송률	비고
2019	2,929,994	1,825,987	62.3	818,191	27.9	
2020	2,766,136	1,594,390	57.6	875,135	31.6	
2021	3,148,956	1,775,395	56.4	1,019,066	32.4	
2022	3,564,720	1,969,375	55.2	1,262,668	35.4	
2023	3,486,526	1,995,982	57.2	1,156,913	33.2	
2024	3,324,287	1,790,794	53.9	1,207,780	36.3	
2025	3,285,948	1,732,914	52.7	1,300,272	39.6	

* 출동건수: 119구급대가 구급현장으로 출동한 건수

** 이송건수: 구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 등으로 이송한 건수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이 비응급환자로 인한 119구급대의 출동이 증가하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저해되고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19구급 요청을 받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출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119신고는 위급 상황 시 국민이 의지하는 핵심 공공안전망이라는 점, 119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신고자의 진술과 전화상 정보만으로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구상센터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 및 미출동 결정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판단 기준과 함께 불가피한 판단 오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입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한정된 119구급자원이 실제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정확한 응급성 여부의 판단에 한계가 있고, 특히 비응급으로 판단하여

4)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2026. 6. 10.

출동하지 않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응급환자의 출동 지연, 판단 오류에 따른 법적·사회적 책임, 신고자 민원 및 수보요원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⁵⁾.

5) 실제로 구급 사안은 아니나, 최근 화재 감지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이 지연된 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듯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현장 확인 없이 긴급성을 배제하는 판단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 화재 감지 신고가 119에 자동 접수 됐으나, 상황실의 오작동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되어 이후 80대 거주자 사망(‘25.12.6. / 전북 김제 주택화재)

2.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알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 ----- ----- ----- <u>1천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30조제1항).

<현행법령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별표]	200	400	500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1,000만원	

거짓 신고로 인해 긴박한 구조·구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조·구급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 상향 여부는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과태료 액수에 대한 유사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 소관 부처의 정책적 필요성, 국민의 정서적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상한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인 「과태료 금액 지침」⁶⁾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범위를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상 명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u>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u>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

(자료: 법제처)

6)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2019.

- 행정상 명령에 관한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의 상세 내용은 [참고 3] 참조

참고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법률상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분포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1천만원’이 23.0%, ‘500만원’이 2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행정상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분포>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건수	64	29	67	81	92	68	401
	%	(16.0)	(7.2)	(16.7)	(20.2)	(23.0)	(17.0)	(100.0)

(자료: 법제처)

둘째, 현행 소방관계법령은 허위 신고로 소방력 등 공권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목적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이와 다른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9조 제1항),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6조제1항 제1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27조제1항)⁷⁾.

<현행 소방 법률 상의 거짓신고 관련 제재규정(예시)>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119 거짓(허위) 신고 관련 소방 관계 법률별 과태료 규정 비교표는 [참고 4] 참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셋째, 현재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거짓신고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2019년 이후 119접수센터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고 건수 81,415,125건 중 거짓의 신고 건수가 4,580건으로 전체의 0.00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짓(허위)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임. 다만, 거짓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까지는 2% 미만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7.1%로 증가하였음⁹⁾.

<최근 5년 간 119 상황실 신고 건수 현황>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신고건수(A)	81,415,125	11,567,173	11,274,559	12,075,804	12,546,469	11,956,459	11,354,929	10,639,732
거짓 신고건수(C)	4,580	930	738	954	986	377	483	112
% (C/A)	0.0056	0.0080	0.0065	0.0079	0.0079	0.0032	0.0043	0.00011

(자료: 소방청)

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2025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자진 납부 등에 따른 1/2 감경 적용 여부,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여부 등에 따라 건별로 달라 질 수 있어 매년 부과 건수와 총 부과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119 거짓신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고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거짓신고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

<2019년 이후 5년간 119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거짓신고 건수(A)	930		738		954		986		377		483		112	
과태료 부과 건수(B)	13	5,000	4	5,000	4	7,000	-		7	12,800	7	29,360	8	35,900
-화재	8	3,000	3	3,000	2	4,000	-		3	6,000	3	16,000	4	30,300
-구조	-		-		1	1,000	-		-		-		-	
-구급	-	2,000	1	2,000	1	2,000	-		4	6,800	4	13,360	4	5,600
B/A(%)	1.40		0.54		0.42		-		1.86		1.45		7.1	

(자료: 소방청)

비록 2025년도에는 거짓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의 비율이 7.1%까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명백한 허위 신고로 판단되더라도 신고자의 현장 이탈, 정지된 전화 사용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대상자 특정 및 신분 확인이 곤란하여 거짓의 명백한 증거 입증이 쉽지 않고, 현장 대원의 행정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¹⁰⁾.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119긴급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최근 119 거짓신고 건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10) 소방청은 119허위(거짓)신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있음. 상세 내용은 [참고 5] 참조

있으며, 거짓신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도 과거보다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청 소관 주요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¹¹⁾,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50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11) 소방청 소관 주요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 현황은 [참고 6] 참조

참고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개요

(자료: 소방청)

□ 설치 배경 및 근거

-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의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 업무를 **119로 통합(12년)**하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조직 및 구성

- **(운영체계)** 국가 단위의 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급센터**와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나뉘어 운영
- **(인력구성)** 관련 자격을 갖춘 **구급 상황요원**(응급구조사, 간호사 등)과 전문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전문의)로 구성*
 - * 19개 시·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 현황

(2026. 1. 1. 기준)

총원	소방공무원							의사	구급상황관리사	공무직 (기간제)
	소계	령 (센터장 or 팀장)	경	위	장	교	사			
357	279	11	31	81	92	56	8	2	25	14(38)

□ 주요 기능

- ① **(의료 상담)** 국민이 적절한 의료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 ② **(현장 지원)** 현장 구급대원이 적절한 최종 치료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상황 관제 및 실시간 응급처치 의료지도** 제공
- ③ **(재난 대응)**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사상자 상황 관리**를 **조정·지원**하며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등 **중요 사항 유관기관 전파**
 - ※ **(중앙 119구급센터)**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 전국 의료지도 백업, ▲ 광역 이송자원 연계, ▲ 응급의료헬기 운용 조정 등 국가 단위 구급상황관리 역할 수행

□ 운영 현황 및 실적

(2025.12.31. 기준 / 단위 : 건)

연번	구분	총계	단순안내			질병 상담	응급 처치 지도	의료 지도	이송 병원 선정	기타
			소계	병원	약국					
총 계		1,658,040	790,062	763,095	26,967	302,898	365,505	132,233	59,319	8,023
비율(%)		100.0	47.7	46.0	1.6	18.3	22.0	8.0	3.6	0.5
1	서울	309,370	186,239	183,369	2,870	45,331	41,049	28,781	7,967	3
2	부산	217,360	108,498	104,541	3,957	76,217	19,771	7,425	5,303	146
3	대구	95,498	49,003	46,613	2,390	5,898	14,949	7,671	17,977	0
4	인천	85,008	34,691	33,458	1,233	19,266	22,520	6,943	991	597
5	광주	47,543	16,790	16,405	385	9,445	16,553	4,162	324	269
6	대전	70,419	49,991	49,204	787	4,904	8,401	5,122	1322	679
7	울산	34,705	10,959	10,639	320	2,386	18,304	2927	78	51
8	세종	11,418	6,347	6,293	54	424	130	4,427	78	12
9	경기	331,355	135,720	133,973	1,747	97,274	82,017	9,640	6,010	694
10	강원	57,860	24,756	22,971	1,785	9,500	10,304	7,611	2,735	2,954
11	충북	45,659	19,068	18,173	895	3,521	14,848	5,543	1,184	1,495
12	충남	56,075	25,013	23,619	1,394	4,723	17,992	4,476	3,070	801
13	전북	60,543	22,755	20,821	1,934	5,340	21,219	6,188	5,041	0
14	전남	41,449	10,629	9,032	1,597	3,921	21,239	4,643	879	138
15	경북	80,855	34,727	32,273	2,454	7,947	23,970	10,352	3,859	0
16	경남	65,638	32,932	30,776	2,156	3,379	18,709	9,609	980	29
17	창원	16,761	13,730	13,311	419	84	1,422	1,345	179	1
18	제주	30,524	8,214	7,624	590	3,338	12,108	5,368	1,342	154

참고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일부 발췌

(자료: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2 수보단계 중증응급환자 인지 프로토콜

1.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3.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4.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시겠습니까? (□ 환자상태 파악 불가능)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의심 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
※ 초기 긴급출동지시가 필요한 상황
 - 심정지
 - 심정지에 준한 상황
 - ▶ 명백한 사망징후 없는 목매(Hanging) 및 호흡없음, 질식(Suffocation)
 - ▶ 물에 빠짐(Underwater), 기도이물, 교통사고, 추락 등 외상성심정지
 - 6명 이상의 환자 발생(다수사상자) 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5. 초기 긴급출동 지시가 필요한 심정지 상황 확인
 - 5-1. 의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5-2. 정상적으로 숨을 쉬습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5-3. 심정지 추정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인 경우 또는 심정지에 준한 상황"인 경우 초기 긴급출동 지시. 전문상담요원에게 CPR 지도를 연결)

 - 5-4.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심폐소생술 안내를 연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6. 특별구급대의 긴급출동 지시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확인
 - 6-1. (심인성 흉통 추정)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6-2. (다발성/중증외상 추정) 6명 이상의 환자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외상인 경우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숨이 빠르거나 숨을 쉬지 않습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6-3. (아나필락시스 추정) 환자의 얼굴이 붓거나 침을 못삼킵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6-4. (응급분만 추정) 환자가 규칙적 진통이 있거나 태아가 보입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 6-5. (뇌졸중 의심 환자 추정) 환자가 팔다리 마비 또는 말 어눌·안면 이상을 호소합니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7. 중증응급환자 여부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인 경우 특별구급대 출동지시 및 특별구급대 출동지시 판단이 어렵거나 뇌졸중 의심환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문상담요원에게 연결한다.)
8.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참고 3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붙임1(행위유형별 분석자료) 발췌”

유형 4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 유형: 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상한액 분포 및 특성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현 행	64	29	67	81	92	68	401
수	2000년 이후	46	20	43	59	82	33	283

- **(특성)** 개인정보, 안전, 외국환 등 관련 명령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경미한 시설개선명령, 원상회복, 장애물 제거 등에 관한 명령의 경우 2백만원 이하로 규정

▷ 고려요소

- **(명령의 종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이행명령이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명령보다 높게 설정
- **(명령의 내용)** 국민의 권리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명령인지, 환경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를 위한 명령인지, 피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명령권자)**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시·군·구청장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 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범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

참고 4

119 거짓(허위)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비교표

(자료: 소방청)

구분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과 금액	과태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차 위반 2백만원	2차 위반 4백만원 3차 이상 위반 5백만원
상황	· 화재,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 화재, 구조, 구급만 해당됨	·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 범위가 포괄적임	·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부과 대상	·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 현장이 중점	· 위급상황에 처한 <u>요구조자</u> 를 발견한 사람(누구든지) ※ 현장+요구조자가 중점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제2조 제1호)	·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u>119긴급신고</u> 를 한 사람(누구든지) ※ 119긴급신고가 중점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제2조 제2호)
부과 권한	·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등(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소방청장등(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률 조항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u>요구조자</u> 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u>요구조자</u> 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u>119긴급신고</u>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5

소방청, 119허위(거짓)신고 과태료 처분 강화 추진 현황

(자료: 소방청)

□ 추진 배경

- 119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야기
- 소방기본법·119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상향(200 → 500만원)하는 등 엄정대처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극 처분에 대해 지속 문제 제기(국회, 언론)

□ 추진상 문제점

- 거짓의 명백한 증거 입증이 쉽지 않고, 현장대원의 행정적 부담 존재
- 명백한 허위신고로 판단되더라도 신고자의 현장 이탈, 정지된 전화 사용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대상자 특정 및 신분 확인 곤란

□ 강화방안

- (적극대응) 허위신고에 대한 소관부서, 역할,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상습 또는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조치

《허위신고 처리 절차(예시)》

-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상황실) → 현장출동 후 상황판단*(출동대) → 허위신고 적발**(출동대) → 과태료 부과(특사경팀)

* 허위신고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 신원 확인

** 신고자 인적사항, 현장활동 자료(일지) 등을 소방서(본부) 특사경에 인계

- (교육강화) 원활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현장대원 대상 직무교육 및 출동대원이 오인신고나 '환자 없음' 사례를 일지(활동정보시스템)에 '거짓 신고'로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실적관리) ①과태료 부과 실적 및 ②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한 사유 또는 처분 내용을 매분기 관리
- (홍보활동)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용급신고 자제

중증응급환자(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를 위해 119구급차를 양보해 주

단순치통	단순감기	단순외상 (골절상·타박상·열상)	주위자	외래진료

“술에 취했어요” “택시가 안잡혀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과태료)**을 부과합니다.

<< 119허위신고 홍보자료 >>

참고 6

소방청 소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자료: 소방청)

연 번	법률명	적용 조항	위반행위	적용대상	과태료 상한액
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누구든지	500만원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에 거짓으로 알린 자	누구든지	500만원
3	소방기본법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 짓으로 알린 사람 등	사고현장 발견한 사람	500만원
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명칭 사용자	500만원
5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6조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칭 사용자	500만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 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300만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안전시설등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중이용 업주	300만원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500만원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관계인	300만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1~9호)	관계인	500만원
1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등 명령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관계인	200만원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등록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시설 업자	200만원
13	소방장비관리법	제48조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500만원